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

일부개정령안
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 (보증 계정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,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
2.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
3. 그 밖의 부대수입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, 결산, 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3항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·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.”를 “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

있다.”로 한다.

제18조의8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발전량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·도지사 등”이라 한다)을 실시기관으로 선정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집적화단지의 조성) ① 시·도지사 등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
2.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
3.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계획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태양광, 풍력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

2. 전원(電源)개발행위가 가능할 것
3.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
4.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
5. 개발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③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 지정 및 실시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) ① 법 제30조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”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
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를 말한다.

별표 2 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연도	2020~ 2021	2022~ 2023	2024~ 2025	2026~ 2027	2028~ 2029	2030 이후
공급의무 비율(%)	30	32	34	36	38	40

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연도	비율(%)
2021년	9.0
2022년	10.0
2023년 이후	10.0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<u>제14조의2 (보증 계정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,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< 신 설 ></u>	<u>② 제1항의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u> <u>1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</u> <u>2.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</u> <u>3. 그 밖의 부대수입</u>
<u>< 신 설 ></u>	<u>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, 결산, 사업계획 등 수탁기관의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.</u>
제18조(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치의 무기관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·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	제18조(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

표할 수 있다.

제18조의8(신·재생에너지 공급
인증서의 발급신청 등) ① ~
② (생략)

< 신 설 >

제27조(보급사업의 실시기관)
① -----
----- . <단서 신설>

< 신 설 >

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
여야 하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은 제출된 결과를 공표할 수 있
다.

제18조의8(신·재생에너지 공급
인증서의 발급신청 등) ① ~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
급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하지
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 발전량
을 공급인증기관이 확인한 경우
에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의
마지막 날에 공급인증서의 발급
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(보급사업의 실시기관)
① -----
----- . 다만, 법 제27
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
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시
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
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
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
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·도지사
등”이라 한다)을 실시기관으로
선정한다.

제27조의2(집적화단지의 조성)
① 시·도지사 등이 제27조제1
항 단서에 따라 실시기관으로
선정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

< 신 설 >

<신 설>

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집적화단지 위치 및 면적
2.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
3.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
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태양광, 풍력 등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
2. 전원(電源)개발행위가 가능할 것
3.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
4.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개발이 가능할 것
5. 개발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

③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 지정 및 실

<신 설>

[별표 2]

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
(제15조제1항제1호 관련)

해당 연도	<u>2011~ 2012</u>	<u>201 3</u>	<u>201 4</u>	<u>201 5</u>	<u>201 6</u>	<u>201 7</u>	<u>201 8</u>	<u>201 9</u>	<u>202 0이 후</u>
공급의무 비율(%)	<u>10</u>	<u>11</u>	<u>12</u>	<u>15</u>	<u>18</u>	<u>21</u>	<u>24</u>	<u>27</u>	<u>30</u>

[별표 3]

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
(제18조의4제1항 관련)

해당 연도	비율(%)
2021년	<u>8.0</u>
2022년	<u>9.0</u>
2023년 이후	10.0

시기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
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8조의2(신·재생에너지 설비
에 대한 사후관리) ① 법 제30
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관의 장”이란 제27조
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
장을 말한다.

②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연
1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
를 실시하여야 하는 신·재생에
너지 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
의 설비를 말한다.

[별표 2]

신·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
(제15조제1항제1호 관련)

해당 연도	<u>2020~ 2021</u>	<u>2022~ 2023</u>	<u>2024~ 2025</u>	<u>2026~ 2027</u>	<u>2028~ 2029</u>	<u>2030 이후</u>
공급의무 비율(%)	<u>30</u>	<u>32</u>	<u>34</u>	<u>36</u>	<u>38</u>	<u>40</u>

[별표 3]

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
(제18조의4제1항 관련)

해당 연도	비율(%)
2021년	<u>9.0</u>
2022년	<u>10.0</u>
2023년 이후	10.0